

2016학년도 제1차
<제323차 이사회 회의록>

2016. 5. 12.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6학년도 제1차

〈제32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0 인	2 인

1. 일 시 : 2016. 5. 12(목) 07:30 ~ 10:40 (회의소집 통보일 : 2016년 5월 4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 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김동연, 신상협, 이영현, 김선용 (10인)

- 감 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 결석임원

- 이 사 : 박상일, 최 홍 (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병원장 탁승제, 교무처장 임석철, 총무처장 임재익,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행정부원장 박재호, 재무회계팀장 안영찬, 재무회계팀장 이재권 (8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행정처장 최종범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담당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중 열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 사 김 동 연

이 사 이 영 현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의료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3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6-109호(2016.5.4)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2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3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7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제8호 2015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9호 법인 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 등 9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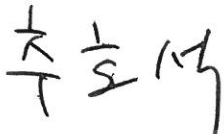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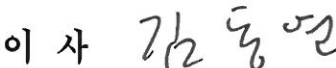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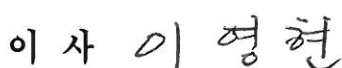
8. 심의내용

제 1 호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받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계산서를 보시면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1,7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수입이 6,029백만원으로 총수입금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 및 기부금수입이 2,192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707백만원, 교육외수입이 300백만원으로 운영수입 합계는 9,228백만원이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2,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보수 3,427백만원, 관리운영비 2,165백만원, 연구학생경비 3,039백만원, 교육외비용이 38백만원으로 운영지출 합계는 8,669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49백만원, 고정자산매입지출 334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2,6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2.29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자산규모는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이사 

32,775백만원이며, 부채는 4,195백만원, 기본금은 28,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금 6,192백만원, 기타유동자산 660백만원, 기타자산 5백만원, 임의기금 3,849백만원, 유형고정자산 22,069백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156백만원, 고정부채가 39백만원이며,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22,259백만원, 임의적립금 3,849백만원, 운영차액 2,472백만원, 전기이월운영차액 3,050백만원, 당기운영차액 △578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2,7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운영총수익은 9,282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등록금수입이 6,029백만원, 전입 및 기부금수입 2,240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707백만원, 교육외수입이 306백만원이며, 운영비용은 보수가 3,427백만원, 관리운영비 3,259백만원, 연구학생경비 3,087백만원, 교육외비용 38백만원, 기본금대체액 49백만원, 당기운영차액 △578백만원으로 비용총계는 9,2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2015회계연도 업무감사에서 아주자동차대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부 감사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태 : 결산(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2 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받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부속병원의 2015학년도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의료수익은 2014학년도 실적대비 4.2% 증가한 421,401백만원이며, 의료비용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414,167백만원, 의료이익은 전년대비 48.9% 감소한 7,23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의료외수익은 20,587백만원, 의료외비용이 26,506백만원으로 1,46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현황으로 2016.2.29 현재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총 자산규모는 228,472백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79,589백만원, 고정자산이 148,883백만원이며, 부채와 자본은 유동부채가 91,469백만원, 고정부채 27,841백만원, 자본이 109,1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속병원의 총수입은 509,225백만원이며, 총지출 금액은 463,067백만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46,158백만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료수입이 398,795백만원, 기타의료수입이 22,606백만원, 의료외수입이 51,805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27백만원, 기타고정부채수입은 250백만원, 차입금수입은 5,248백만원, 기본금증가수입 14백만원, 전기이월운영자금이 30,4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67,228백만원, 재료비는 144,180백만원, 관리비는 55,551백만원, 의료외비용은 13,311백만원, 기타투자자산지출은 551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 480백만원, 차입금상환이 8,757백만원, 유형고정자산지출이 28,473백만원, 고유목적사업전출금이 44,536백만원 되겠으며 차기이월운영자금은 46,1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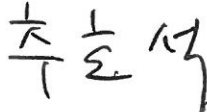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먼저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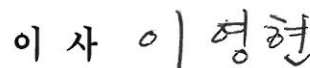
감 사 배 홍 기 :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결산 감사 결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각각 의료기관회계규칙과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5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먼저 불용 의료장비 반납과 처분 관리의 적정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의료원 「자산관리규칙」 제27조(불용품의 반납과 처분)에 따르면 ‘자산의 노후 기타 사유로

< 간서명 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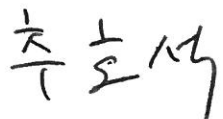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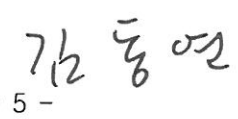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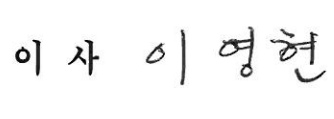
이사장 

이사 

이사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반납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반납 통보를 하여야 하며, 고정 자산이 그 형태대로 재사용할 수 있거나 잔존물로서 매각의 가치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품처분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기능)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용가능여부, 불용처분자산에 대한 매각금액 결정 및 양도방법 등에 대하여 불용결정(폐기, 매각 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과거 3년간 의료원의 고정자산 불용품처분위원회는 4회 개최 후 모두 폐기하였으며 폐기자산의 취득 이후 경과연도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6년~9년은 20.2%, 10년~15년은 27.3%, 16년~20년은 5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개선 사항으로는 정기재물조사 시 불용자산현황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고정자산 불용품처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용자산에 대한 폐기 외 기증, 매각 등 다른 양도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3년간 폐기자산의 취득 이후 경과연도가 16년~20년 이상인 자산의 비중이 약 53%이므로 회계상 경제적 내용연수(5년)가 타당한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수입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는데, 아주대병원의 과거 3년간 국고보조수입은 2013년 128.7억(20건), 2014년 144.5억(23건), 2015년 182.4억(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고사업 관련 회계처리는 재무회계팀이 수행하고, 국고사업의 계획수립, 예산집행, 보조금 관련 업무 등에 대하여는 각 국고사업 해당 부서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기준이 상이하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행정지원인력의 분산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 또한 초래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향후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노하우 축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고보조수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고사업과 관련하여 분산된 행정지원인력을 통합하여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를 지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수입의 확대방안 모색, 업무처리의 효율성,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운영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아주대병원 인턴 모집 관련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2016년 아주대병원 인턴모집 결과 60명 정원에 54명이 지원하여 정원에 미달하였으며 이는 경기지역의 총 10개 병원 인턴모집 결과와 비교시 가장 낮은 지원율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수련부가 제출한 3개년 타교생 지원현황을 보면 조선대와 고신대 등 지방대 병원에서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인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질'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근무강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아주대병원 인턴모집 관련 타교생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담당부서의 핵심성과 평가지표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이사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치과병원 진료수익 개선 방안을 확인하였는데, 과거 3년간 치과의 각 세부전공별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교정과와 구강악안면 외과 및 소아치과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6년 3월부터 제1진료부의 임상과 소속이었던 치과가 치과병원으로 조직 개편되었으며, 기존 치과는 각 진료과를 세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입실적 관리 및 원인 분석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개편된 치과병원의 6개 전문 분야 특성에 맞는 운영 계획을 수입하고 진료수입이 감소한 과에 대하여 진료수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진료과별 월별 진료수입 분석뿐만 아니라 진료과별 이익도 매월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수입 및 진료이익의 증감 원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여 경영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부속병원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주 인 옥 : 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오픈과 관련하여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 오픈을 통해 적정 인력을 확인한 후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장 탁 승 제 : 인건비 위기 의식으로 내부 임금동결의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외상센터의 간호 인력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권역외상센터에서 100병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 주 인 옥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일 외래 환자수를 quantity로 본다면 quality는 신환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병원 실적에 신환 비율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저는 전년도 감사 개선 이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년 보고해 주시는 전년도 감사 조치 개선사항 이행결과를 살펴보면 실효성 있는 조치 결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로 조치할 예정으로 보고해 주시는데 시간이 경과하여 확인해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조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병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감사내용을 간과하지 마시고 팔로우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 장 : 이 외 결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김 성 진 : 결산(안)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조실장 한상욱 : 의료원은 특별임용교원의 구분 및 처우를 명확히 하고 진료교수 임용절차 보완과 더불어 시행규칙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임용교원 신분별 정의를 구체화 하고 계약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임용교원 임용기간 만료시 당연퇴직의 문구를 명시하고, 특별임용교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교수의 공개채용 원칙을 명시하고 세부 기준이 될 규칙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이하 “특별임용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이하 “특별임용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한상욱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 2 조(특별임용교원의 구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좌교수 2. 대우교수 3. 강의교수 4. 연구교수 5. 진료교수 6. 겸임교수 <p>② 석좌교수 및 강의교수를 제외한 특별임용교원의 직위는 의료원 교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p>	<p>제 2 조(구분 및 직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좌교수 : <u>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있는 인사로서 외부기금 또는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교원</u> 2. 대우교수 : <u>학생교육, 연구활동, 진료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u> 3. 강의교수 : <u>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u> 4. 연구교수 : <u>특정연구과제 수행, 연구소 운영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u> 5. 진료교수 : <u>임상진료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u> 6. 겸임교수 : <u>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산업체의 전문가로서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u> <p>② 석좌교수, 강의교수 및 겸임교수를 제외한 특별임용교원의 직위는 「의료원 교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보 칙</p> <p>제 12 조(임용시기) 특별임용교원의 신규임용은 <u>매년 3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보충과 무급의 경우는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 3 조(임용시기) 특별임용교원의 신규임용은 <u>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임용 할 수 있다.</u></p>
<p>제 13 조(계 약) 특별임용교원은 임용시 임용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 4 조(계 약) 특별임용교원은 임용시 임용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u>임용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임용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 5 조(처 우) 특별임용교원의 권한, 책임 및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u>국가가 인정하는 교원으로서의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u></p>
<p>제 14 조(보 수) 특별임용교원의 보수는 연봉</p>	<p>제 6 조(보 수)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 늘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현 행	개 정
제로 할 수 있다.	
제 15 조(예 산) 특별임용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 의료원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예 산) 특별임용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 설>	제 8 조(당연퇴직)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제 2 장 석좌교수	제 2 장 석좌교수
제 3 조(자 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로서 외부기금 등의 재원으로 임용된 자로 한다.	제 9 조(자 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며,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로 한다.
제 4 조(임 용) ① 석좌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에게 제청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임 용) ① 석좌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이 <u>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u> 의료원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에게 제청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u>재임용</u> 할 수 있다.
제 5 조(처우 등) ① 석좌교수의 권리와 의무는 전임교원에 준한다. ② 석좌교수의 보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 3 장 대우교수	제 3 장 대우교수
제 6 조(자 격) 대우교수는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 연구, 진료 등을 위하여 임용된 자로 한다.	제 11 조(자 격) 대우교수는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 연구, 진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7 조(임 용) ① 대우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유)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우부교수 이	제 12 조(임 용) ① 대우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유)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u>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u> 의료원장의 승인을 <u>얻은 후</u> 총장에게 제청하며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현 행	개 정
<p>상의 대우교수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p> <p>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③ 대우교수의 임용기준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에 준한다.</p>	<p>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우부교수 이상의 대우교수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p> <p>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u>제임용</u>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8 조(처 우) 대우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일한 권한, 책임 및 의무를 가진다.</p>	<p><삭 제></p>
<p>제 4 장 <u>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u></p> <p>제 9 조(자 격) <u>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u>는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강의, 연구, 병원진료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p>	<p>제 4 장 <u>강의교수</u></p> <p>제 13 조(자 격) <u>강의교수</u>는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u>자로</u> 한다.</p>
<p>제 10 조(임 용) ① <u>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u>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u>경유</u>)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u>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u>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p>	<p>제 14 조(임 용) ① <u>강의교수</u>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u>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u>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u>강의교수</u>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u>제임용</u>할 수 있다.</p>
<p>제 11 조(처 우) ① <u>연구 및 진료에 있어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u>의 권한, 책임 및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p> <p>② <u>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u>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원으로서의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p>	<p><삭 제></p>
<p><제9조 내용 분리></p>	<p>제 5 장 <u>연구교수</u></p> <p>제 15 조(자 격) <u>연구교수</u>는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u>자로</u> 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현행	개정
<p>〈제10조 내용 분리〉</p>	<p>제 16 조(임 용) ① 연구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②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p>
<p>〈장 신설〉</p>	<p>제 6 장 진료교수</p> <p>제 17 조(자 격) 진료교수는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추고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다만, 치과의사는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을 취득한 자로 한다.</p>
	<p>제 18 조(공개채용의 원칙) 진료교수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제 19 조(임용기간) 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제 20 조(임용 절차 및 기준 등) 진료교수의 임용 절차, 기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5 장 겸임교수</p> <p>제 11 조의 2(자 격) 겸임교수는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p>	<p>제 7 장 겸임교수</p> <p>제 21 조(자 격) 〈현행과 같음〉</p>
<p>제 11 조의 3(임 용) ① 겸임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삽 입>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제 22 조(임 용) ① 겸임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면

이사

이 영 현

현 행	개 정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 11 조의 4(직 무) 겸임교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교육, 공동연구,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23 조(직 무) <현행과 같음>
제 11 조의 5(처 우) ① 겸임교수의 권한, 책임 및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② 겸임교수는 국가가 인정한 교원으로서의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	<삭 제>
제 16 조(준 용) 특별임용교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및 의료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총무처장 임제익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은 국제화사업팀의 팀장 보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9조 제10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교류팀 팀장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직무를 수행할 국제화사업팀이 2016년 1월 신설되어 국제화사업팀의 팀장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 (대학교본부) ① 내지 ⑨ (생략) 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u>국제교류팀</u> 의 경우 계약직원으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제9조 (대학교본부) ① 내지 ⑨ (현행과 같음) 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u>국제화사업팀</u> 의 경우 계약직원으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5 호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재직 기간동안 대학발전에 공헌한 장기 근속교원에 대하여 명예로운 퇴직 예우를 위하여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 호 석 이사 김 동 면 이사 이 영 현

이 사 장 : 그러면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 (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② 총장은 전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자를 결정한다.</p> <p>③ 명예퇴직대상자가 결정되면 교무처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조 (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u>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1. <u>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u></p> <p>2. <u>장기근속 교원</u></p> <p>3. <u>상위직 교원</u></p> <p>② 총장은 전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자를 결정한다.</p> <p>③ 명예퇴직대상자가 결정되면 교무처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u>부 칙</u>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6 호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임제익 :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계산서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46,850백만원으로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금 수입은 126,011백만원, 전입금 수입은 55,198백만원, 기부금수입 4,825백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5,476백만원, 교육부대수입 13,469백만원, 교육외수입은 3,026백만원이며, 기타자산수입은 1,610백만원, 임의기금인출수입 8,374백만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입금수입이 30백만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8,8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보면 보수가 112,030백만원, 관리운영비 24,411백만원, 연구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비 6,377백만원, 학생경비 66,661백만원, 교육외비용은 899백만원이며, 기타자산지출 40백만원, 임의기금적립금이 18,025백만원, 유형고정자산매입이 8,469백만원이고 장기차입금 상환액 1,000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이 100백만원으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8,8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2.29 현재 교비회계의 자산총액은 311,213백만원, 부채총액은 75,407백만원, 기본금총액은 235,806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유동자금은 56,752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8,093백만원, 투자자산이 115백만원, 기타자산 1,096백만원, 임의기금 81,289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53,868백만원으로 총자산규모는 전년대비 4,590백만원 증가한 311,213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66,006백만원, 장기차입금이 8,000백만원, 기타고정부채는 1,401백만원으로서 부채 총액은 전년대비 561백만원 증가한 75,4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이 91,919백만원, 임의적립금이 81,289백만원, 운영차액이 62,598백만원으로 기본금의 합계는 235,806백만원으로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11,2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 운영계산서를 설명 드리면 운영총수익은 228,074백만원, 운영비용은 224,045백만원, 기본금대체액 18,025백만원, 운영차액 대체액 △ 8,374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은 △ 5,6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 201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우선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먼저 대여료 및 사용료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에 따르면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으며, 「시설물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5조(시설물 대여절차) 및 제6조(사용료)에 따르면 시설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대여 신청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학교시설물의 외부 대여현황을 살펴보니 외부 대여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현

이사

이 영 현

42건 중 접수서류를 미비 건은 16건(38%), 책임부서인 총무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23건(55%), 접수 이후 취소가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취소 관련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2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잔디구장 및 체육관의 경우 대여현황(업체명, 대내/대외 여부, 대여 장소, 접수일, 승인일, 사용일, 취소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대여현황 리스트가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대여에 대한 완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체육관에서 시간제 근로 운용 시 시간제 근로 운영에 대한 비용을 대여자로부터 징수하고 교내행사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발행하고 교외행사의 경우 총무처장이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나 교비회계의 수입 및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및 「시설물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 위반 건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교내시설 대여에 대하여 대여현황의 관리 및 누락 등의 발생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접수, 승인, 대금회수에 대한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권한 집중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 등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가 필요한 경우 교비회계의 수입 및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총무팀에서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대학원 지식정보공학과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관리의 적정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은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참여대학교와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석사과정을 운영하면서 해당 석사과정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졸업 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의 기업에 입사하여 2년 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여 대학원생에게 석사과정 동안의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되, 고용계약형 석사관리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 참여대학원생이 위반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서 2년 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일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참여대학교는 참여 대학원생의 휴학 또는 퇴학 사실, 취업한 참여자의 2년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KISA에 한학기에 1회 보고하고 KISA는 이를 심사하여 환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지식정보공학과와 각종보안관련 석사과정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계약형 석사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총 119명의 사업수혜 학생 중 21명의 협약 위반 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KISA에서 직접 환수하지 못한 6건에 대하여 아주대학교가 대납한 금액이 101백만원으로, 아주대학교는 KISA에 대납한 환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 현재 약 76백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은 참여대학원생에게 학업의 지속 및 졸업 후 근무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참여학교가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향후 사업비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확인 및 보고가 중요시 되는 사업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입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 지식정보공학과는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참여학교가 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관련 계약 시 아주대학교가 학생 졸업 후 약정 위반까지 사업비를 대납하는 조항이 아주대학교 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기계기구 물품구매 검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아주대학교는 2016학년도 예산운용기준에 따라 1회 구매 금액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계기구, SW, 집기 등 자산성 물품은 AIMS2시스템(아주대학교 전산시스템)에서 중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검수규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시설공사, 임대차 및 용역 발주(계약)부서는 필요 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 관제팀에 검수의뢰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요청부서는 AIMS2시스템상에서 중앙구매 모든 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와 계약서 등의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업체가 납품한 물품의 사진을 AIMS2시스템상 직접 업로드한 후 요구부서 담당자가 1차 검수완료를 승인하면 구매관제팀의 검수관이 검수여부를 판단하여 2차 검수 확인 후 물품납품서 승인을 통해 자산등재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수규칙 상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납품서로 검사조서를 대신하고 있으며 구매 관제팀의 검수관의 검수여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수 여부를 사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규칙」에 검수하여야 하는 품목 및 금액,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AIMS2시스템상 검수담당관의 승인 시 철저한 검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매요청부서의 1차 검수 시 구매요청 담당자 이외 해당 팀의 상위권자가 검수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도록 결재라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현장실습수업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아주대학교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 제4조의2에 의하면 현장실습수업은 산업현장실습대상기관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기관의 사정으로 협약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현장 실습동의서로 협약을 대체할 수 있으나, 학과 내 담당자 변경 또는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자료 분실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협약서 또는 실습동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참여기관이 각각 2곳, 3곳 및 11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수업에 대한 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원별로 최대 3학점이며 과목별로 3명을 기준으로 이수학점의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목별 1명의 수강인원으로 4과목을 맡고 있는 교원은 1.33학점을 책임시수로 인정하는 반면, 한 과목에 21명을 맡고 있는 교원은 1학점만을 책임시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수업은 일반수업과는 달리 교원의 참여기관 발굴 및 학생 지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서 교원의 노력 또는 시간투입이 수강인원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 협약서 또는 동의서 등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관련 자료 일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 협약서나 동의서에 대한 자료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수업은 학생 취업률 향상, 대학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사업이므로 현장실습수업의 활성화 및 교수 참여율 증대를 위하여 교원의 노력 또는 시간투입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수강인원도 추가로 고려하여 교원의 책임시수를 인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이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 소정시간의 근무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7일 제정된 「초과근무의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보수규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근무명령과 상관없이 초과근무 발생 후 팀장 전결로 총무팀에 제출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무팀은 제출된 초과근무 수당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초과근무신청의 적정성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아주대학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무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아주대학교 「보수규정」과 「초과근무의 시행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며, 총무팀은 초과근무수당 신청자의 차량 입출입 확인, 초과근무여부를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불시에 확인하는 등 각 부서에서 제출된 초과근무 수당신청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교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교비회계 결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7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의 임기가 2016년 5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교원징계위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현행과 같이 학교의 장 추천자 중 4인과 이사 중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우선 학교의 장 추천자에 대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교원 명단 및 자세한 이력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의 장께서 추천하신 8인의 후보 중 4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고,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학교의 장 추천자 중 생명과학과 최홍근 교수, 경영학과 김광운 교수,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구 교수, 의학과 조기홍 교수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로 선임·의결하다.)

이 사 장 :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는 지난 해 이사회 의결에 따라 문길주 이사님, 주인욱 이사님, 박상일 이사님 세 분께서 징계위원을 맡아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까 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문길주, 이사 주인욱, 이사 박상일, 생명과학과 최홍근 교수, 경영학과 김광운 교수,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구 교수, 의학과 조기홍 교수 등 7인을 임기 1년(2016.6.1 ~ 2017.5.31)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8 호 2015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이 사 장 : 2015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결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자금계 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3,004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부속병원전입금 수입이 5,670백만원, 수익사업전입금 수입이 2,286백만원, 일반기부금 수입 981백만원, 예금이자수입 1,260백만원이며, 임대료·관리비수입이 1,890백만원, 잡수입 1,040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13,127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 자산수입이 19,908백만원, 임대보증금수입이 160백만원, 장기차입금차입이 10,000백만원으로 미사용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전기이월자금은 9,8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임직원보수 719백만원, 시설 관리비 138백만원, 일반관리비 292백만원, 운영비 375백만원이며, 지급이자 224백만원, 전출금 8,749백만원, 잡손실 23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10,520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 자산지출이 1,410백만원, 자산 및 부채지출이 33,983백만원으로 2015 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7,0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2.29 현재 자산규모는 342,69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2,181백만원, 기본금총액은 330,5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유동자금이 6,924백만원, 기타유동자산 245백만원, 설치학교 172,621백만원, 부속병원투자 79,872백만원, 투자유가증권 1,664백만원, 기타투자자산 23백만원, 유형고정자산 52,973백만원, 원금보존 기타기금이 27,629백만원, 임의퇴직기금이 488백만원, 기타자산 등이 254백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42,693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78백만원, 장기차입금이 10,595백만원, 기타고정부채 1,508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2,181백만원이며, 출연기본금은 248,518백만원, 운영차액이 53,877백만원, 원금보존 기타적립금 27,629백만원, 임의퇴직적립금 488백만원 등 기본금은 330,512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42,6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법인회계의 운영수익은 17,393백만원, 운영비용은 15,102백만원, 기본금 대체액 197백만원 및 운영차액대체액은 19,908백만원으로 당기운영차액은 22,0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운영본부장 박재호 : 다음으로 법인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장례식장 회계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075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장례식장 운영수입이 2,853백만원, 임대료 수입이 1,932백만원, 관리비 수입 12백만원, 잡수입이 153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4,950백만원이며, 자산 및 부채 수입이 1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보수가 467백만원, 시설관리비 5백만원, 일반관리비 312백만원, 운영비 450백만원이며, 재료비 402백만원, 전출금 2,286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3,922백만원이며, 자산 및 부채지출이 870백만원으로 2015 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2.29 현재 자산총액은 1,205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508백만원, 기본금총액은 6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이 124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60백만원, 유형고정자산이 7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201백만원, 고정부채는 307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508백만원이며, 운영차액 등 기본금 합계액은 697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1,2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장례식장 회계의 운영수익은 4,950백만원, 운영비용은 3,936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은 1,0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성도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의견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역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기준에 따른 2016년 4월 1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59.3%로 타 학교법인의 확보율과 비교하여 저조하지 않은 규모이며 전출 실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수익률인 3.5% 이상인 8.8%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법정부담률 또한 법정전출 의무비율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의견주신 내용 외에 법인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법인회계 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법인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23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이 저와 김동연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3차 이사회회 폐 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6 년 5 월 12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 사	김 성 진	김 성 진
이 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 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 사	신 희 택	신 희 택
이 사	주 인 욱	주 인 욱
이 사	김 동 연	김 동 연
이 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 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 사	문 휘 창	문 휘 창
감 사	배 홍 기	배 홍 기